

의안번호	2213299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6.1.5.
추계번호	25B5309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3,600만원, 2031년 5,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 5,200만원(연평균 1억 7,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582	—	—	—	—	582	11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 지침의 수립 등(안 제9조)	42	42	42	42	42	210	42
추가재정소요	636	54	54	54	54	852	170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시 투명성, 효율성, 공공성을 도모하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제품의 개발 및 품질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이익의 재투자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국민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이용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구매촉진)	공공기관등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 공동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보급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도별 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도별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시·도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1.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함(제3항)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조달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노동, 환경, 복지, 경영,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의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국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협의체 등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제6항)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6	안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위한 시행지침(이하 “구매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달사업의 목적과 산업, 지역 및 공공기관등의 설립목적과 운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제2항)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제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의 집계, 공표·제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기관등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매시행지침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회계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구매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라 구매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구매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등)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및 제도개선 실적(이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제출한 구매 및 제도개선 실적이 구매시행계획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9	안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회적 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됨(제2항)	의무규정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3조(경쟁 제품의 계약방 법)	공공기관등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사회통합적 고용 및 노동통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와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14조(경쟁 입찰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참여자격의 기준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재량·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음(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4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5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함(제5항)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6조(직접 생산 확인에 대 한 이의신청 등)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함(제6항)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하는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의무규정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 기간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 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 터 30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17조(직접 생산 확인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 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5	안 제18조(직접 생산 확인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회적 경제기업이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함(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 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확 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를 통한 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납품 (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 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신청을 아니한 경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이 제1항에 따라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함(제5항)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회적경제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방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6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함(제8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18조(과징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6	안 제19조(공공기관등의 우선구매)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기관등 별로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함(제2항)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중협동조합연합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공공기관등은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0조(수의 계약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제1항) 1. 사회통합적 고용창출 실적 2. 창출한 고용의 질 3. 노동통합 기여도 4.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실적 5. 환경에 대한 영향 6.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영향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8	안 제21조(행정기관 소관사무 민간위탁 시 우선 기회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재량규정
19	안 제22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조달청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0	안 제23조(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율경영공시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공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노동, 복지, 환경, 인권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 부처의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후 계약 등 공공구매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3항에 따른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의 평가요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 관계 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함(제4항)	의무규정
21	안 제24조(판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2	안 제25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비자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이하 “전자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안전 및 구매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2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하 “전용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2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4	안 제2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이하 “구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매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그 밖에 구매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5	안 제28조(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교육 2.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관련 실무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생산·품질제고 관련 교육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및 창업촉진 관련 교육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6	안 제29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31조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7	안 제30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8	안 제3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 활성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9	안 제32조(포상 및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제1항)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등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적경제기업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제3항)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4.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재량규정
30	안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1. 제5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장 2. 제15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4.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장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1	안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2항) 1. 제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 수립 2. 제15조에 따른 직접생산의 확인 3. 제16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4. 제17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재량규정
32	안 제37조(과태료)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명시적 규정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구매촉진)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6조(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 매촉진 기본계획 의 수립 등)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7조(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 매촉진 시·도별 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도별 계획(이하 “시·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 는 내용으로, 제정안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은 시·도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8조(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 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6	안 제9조(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 매시행지침의 수 립 등)		
7	안 제10조(사회 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제1항 및 제2항) 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구 매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구매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등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 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3항 및 제4항) 제정안은 구매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고용노 동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시행계획 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및 시·도지사 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제정안에 규정된 판로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구매시행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및 제도개선 실적(이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이 제출한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 구매시행계획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회적 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13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 미대상 – (제1항 및 제2항) 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공공기관등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3항 및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4조(경쟁입찰 참여자격)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참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2 13 14	안 제15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안 제1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안 제17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생산설비 기준 등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안 제15조),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제정안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16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안 제17조) 등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 부담 및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의 확인을 위한 조사 물량, 조사 단가, 조사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5	안 제18조(과징금)	—	• 미대상 –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16	안 제19조(공공기관등의 우선구매)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등 별로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등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7	안 제20조(수의계약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기준과 사회통합적 고용창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등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8	안 제21조(행정기관 소관사무 민간위탁 시 우선 기회 제공)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등은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9	안 제22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제정안이 시행되어도 조달청, 고용노동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	안 제23조(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율경영공시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 부처의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후 계약 등 공공구매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 부처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1	안 제24조(판로 지원사업)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²⁾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22	안 제25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비자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이하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안전 및 구매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에서 전자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3	안 제2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항)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하 “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설치할 전용판매장의 설치 개수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제2항)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4	안 제2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항)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이하 “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설치할 구매지원센터의 설치 개수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제2항)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구매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구매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5	안 제28조(구매 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및 창업촉진 관련 교육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재정적 지원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나,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6	안 제29조(재정 지원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항 및 제3항)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기술개발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기술개발을 시행할 사회적경제기업과 우선구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2항)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7	안 제30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분을 예측하기 어려움
28	안 제3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 활성화 등)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미대상(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미첨부(제6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행사 규모와 이에 대한 지원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나,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29	안 제32조(포상 및 평가 등)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0	안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등의 장 또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1	안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 수립 및 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2	안 제37조(과태료)	—	• 미대상 – 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용역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제정안을 준용하여 5년으로 산출하며, 실태조사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5년으로 가정함

* (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 (주요내용)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³⁾에 따라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등 기초 연구
- －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 － (수행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용역예산) 4,700만원(2022년)

*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 (용역예산) 5억 3,500만원(2022년)
- －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 － (발주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3)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	47	—	—	—	—	47
실태조사	535	—	—	—	—	53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의 수립 등(안 제6조)	582	—	—	—	—	582

자료: 고용노동부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단가, 회의 개최 횟수 등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수) 15명

— 제정안은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도록 규정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조달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노동, 환경, 복지, 경영,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정안은 민간위원의 규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본 추계서는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의 수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단가)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⁵⁾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반기별로 1회씩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위원회	2	2	2	2	2	—
실무위원회	2	2	2	2	2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등(안 제9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위한 시행지침(이하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시행지침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며, 연구용역 비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4,2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42	42	42	42	42	210

주: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5)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억 7,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582	—	—	—	—	582	11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등(안 제9조)	42	42	42	42	42	210	42
추가재정소요	636	54	54	54	54	852	170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